

1. 원외탕전원 공동이용 협약서 샘플

※ 붉은 표시된 곳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

※ 협약서는 2부 작성해주세요

원외탕전원 공동이용 협약서

한의원명 (이하 “갑”이라한다)과 안중한의원 부설 원외탕전 AJ원외탕전(이하 “을”이라한다)은 다음과 같이 원외탕전원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 [목적]

본 계약은 “갑”과 “을” 사이의 탕전실 공동이용 및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“갑”의 탕전 관련 업무를 위탁함에 따른 “갑”과 “을” 상호간의 권리 ` 의무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[탕전실 공동이용 및 위탁]

1. “갑”은 제 2항에서 지정한 탕전실을 공동이용하여 탕전업무를 “을”에게 위탁할수 있다.
2. 공동 이용대상 탕전실 : AJ원외탕전원 (안중한의원 부설 원외탕전)
(소재지 : 서울 강서구 허준로91 대한한의사협회 4층)

제 3조 [위탁 업무의 범위]

1.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“갑”의 처방에 따른 한약제제의 탕전과 관련한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.
 - 가. “갑”의 처방에 따른 한약제제의 가공/탕전 업무
 - 나. 위 가.호 각 업무에 사용될 한약재(원재료)의 구입 및 환제 등의 가공/탕전에 필요한 부재료의 구매업무
 - 다. 위 나.호와 같이 구입된 원재료 및 부재료의 관리업무
2. “갑”은 가공/탕전을 위해 필요한 처방전을 사전에 “을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3. 본 조 위탁에 따른 한약제제의 최종 검사/포장 및 배송에 관하여는 “갑”의 별도 요구 및 합의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신속/원만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“을”은 최대한 조치하여야 한다.

제 4조 [을의 의무]

- 1.“을”의 공동 탕전에 필요한 탕전설비, 환기 및 배수시설 등 탕전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특히 탕전업무의 경우, “을”은 탕전실 등에 한약사를 상주시켜 “갑”으로부터 조제지시서 및 처방전에 따라 조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2.“을”은 안정성 및 효능이 가장 우수한 약재를 구입·사용하여야 하며, 약재 및 한약의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3.“을”은 탕전을 의뢰한 한의사의 조제지시서, 처방전, 조제작업일지,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, 탕전/가공된 한약제제의 배송일지등 관련서류를 작성, 보관한다(조제기준 최소 2년)

제 5조 [갑의 의무]

- 1.“갑”은 “을”이 설치한 탕전실을 공동 이용함에 있어, 탕전실 공동이용 보수(탕전 용역 및 기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)를 “을”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보수 지급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탕전/가공된 한약제제를 탕전실 밖으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2.단, 별도 협의된 경우 합의에 따라 지급한다.

제 6조 [처방전 의뢰기준]

1. “갑”은 컴퓨터 통신이나 모사전송(팩스)을 통해 “을”에게 처방전(일반처방전 양식 기준)을 교부함으로써 탕전/가공을 의뢰할수 있다.
2. 수처벌제가 필요한 약재의 경우, “갑”은 그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여 원할한 조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.
3. “갑”이 의뢰한 처방전 중에 독성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 위해가 되는 경우, 탕전/가공하기가 난해한 처방의 경우, 상당한 시일이 소용되는 경우 등 탕전/가공이 부적절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“을”이 처방의뢰를 거부할수 있다.

제 7조 [운송/인수/검수]

1. 탕전/가공된 한약제제의 최종 검사/포장/배송에 관하여는 “갑”의 별도 요구 및 “을”의 승낙에 의한다. 단, 배송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/요구가 없는 한, 탕전 /가공된 한약제제의 인도장소는 “갑”의 영업장소로 하되, 배송과정에서 한약제제의 분실,변질, 손상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재발송 비용은 “을”이 부담한다.
2. “갑”은 외관상의 하자나 수량부족 등 곧 발견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하여 상품을 인수한 다음날 18시 까지 “을”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한다.

제8조 [계약기간]

1.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 년으로 한다.
2.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(즉,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), 기간 만료일로부터 1달 전 상대방에게 계약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3. 제 2항의 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지의 통지 없이 계약기간을 경과한 경우,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.(묵시의 갱신)

제9조 [손해배상]

1. “을”은 “갑”이 조제지시 및 처방의뢰한 한약제제에 관하여 안정성을 검사하고 ,관련기록을 구비하여야한다. 검사 및 그에 따른 관련기록이 구비된 경우, 탕전과 관련하여 “을”의 무과실로 간주되나 검사결과 및 관련기록이 미비된 경우에는 “갑”과의 협의에 따라 민원 발생원인을 규명한 후 . 귀책범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2. “갑”은 조제지시서나 처방전의 과실로 인한 환자 이상증세 피해발생 및 한약제제로 인한 복용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미비로 인한 환자의 금전적 배상/보상 청구에 관하여 “을”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없다. 또한, “갑”에게 인도된 이후, 보관상의 잘못으로 인한 한약제제의 가치저하 및 변질로 인한 피해발생의 경우에도 “을”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체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.

제10조 [계약의 해지]

1. “갑”또는 “을”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.
 - 가.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본질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(단, 상대방으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이행을 최고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)
 - 나. 당사자 일방의 사망, 당사자 일방에게 재정상의 위기, 파산, 행정처분 등 본건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
 - 다. 기타, 당사자 일방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
2.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지 사유가 일시적 사유로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해지와 관련하여 정산이 필요한 경우, 기타 계약해지를 유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상당기간 계약해지를 유예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.

제11조 [계약의 유보사항 및 관할]

1. 본 계약은 의료법`약사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며, 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은 별도의 약정을 할수 있으며 ,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.
3.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합의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되,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“을”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다.

제12조 [계약서의 보관]

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,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`날인 하고, 각 1통씩 보관한다.

제 13조 [효력발생시기]

본 계약은 “갑”과 “을”의 계약시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, 상호 협의하여 시기를 조절할수 있다.

201 7 년 7 월 7 일

“갑” 의 료 기 관 명 : **홍길동 한의원**
소 재 지 : **약침쓰면 잘나가기**
성 명 : **홍길동** (인) ←서명또는도장

“을” 의 료 기 관 명 : 안중한의원
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마포대로4나길 13
성 명 : 안 병 수

